|  |  |  |
| --- | --- | --- |
| **청정생산심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환경보호총국령제38호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2012년)을 실현시키고, 청정생산심사절차를 한 단계 규범화하며, 지방과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하는 것을 더욱 잘 지도하기 위해, 우리는 <청정생산심사 임시방법>에 대해 개정하였고, 이에 개정된 <청정생산심사방법>을 반포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2004년 8월 16일 반포된 <청정생산심사 임시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및 원(原)국가환경보호총국령16호령)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서소사  환경보호부 부장: 진길녕  2016년5월16일  제1장 총칙  제1조 청정생산을 촉진시키고, 청정생산심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청정생산심사라 함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 대한 조사 및 진단을 진행하여, 에너지소모가 높고, 물자소모가 높으며, 오염이 심각한 원인을 찾아내, 에너지소모, 물자소모, 폐기물생산을 줄이고 또한 유독유해물질을 감소시켜 사용 및 생산하며 폐기물 자원화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기술경제 및 환경적으로 실행 가능한 청정생산방안의 과정을 선정 및 실시한다.  제3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모든 생산과 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부문에 적용한다.  제4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환경보호부와 전국청정생산심사의 조직, 협조, 지도와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한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은 환경보호 주관부문, 에너지절약 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이하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라 약칭) 및 기타유관부문과 본 지역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청정생산심사를 조직∙전개한다.  제5조 청정생산심사는 기업을 주체로 하여, 기업의 자발적 심사 및 국가의 강제적심사를 결합하고, 또한 기업자주심사와 외부협조심사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전개하며, 실효성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2장 청정생산심사범위  제6조 청정생산심사는 자발성심사와 강제성심사로 구분한다.  제7조 국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본 방법 제8조에 규정 이외의 기업은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조직∙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1 오염물질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에 규정된 배출표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국가 또는 지방에 규정된 배출표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중점오염물질배출총량이 규제지표를 초과한 경우  8.2 고(高)에너지소비로 구성된 단위제품이 에너지소비 제한액 표준을 초과한 경우  8.3 유독유해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 또는 생산 중 유독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그 중 유독유해원재료 또는 물질은 다음의 몇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제1류, 위험폐기물. <국가위험폐기물목록>에 열거된 위험폐기물 및 국가에 규정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법에 근거하여 인정된 위험특성을 가진 폐기물을 포함한다.  제2류, 맹독화학품 및 <중점환경관리 위험화학품목록>에 열거된 화학품 및 상술한 화학품을 함유한 물질  제3류,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금속류 비소가 함유된 물질  제4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첨부에 열거된 물질  제5류, 기타 독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제3장 청정생산심사의 실시  제9조 본 방법 제8조 제1관 및 제3관에 규정된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명단은 소재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관리권한에 따라 제기하고, 나아가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결정 거친 후 확정하며, 속지원칙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서면통지하고, 또한 동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과 업종관리부문에 송달한다.  본 방법 제8조 제2관에 규정된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명단은 소재지 현급 이상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 관리권한에 따라 제기하고, 나아가 성급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결정 거친 후 확정하여, 속지원칙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서면통지하고, 또한 동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과 업종관리부문에 송달한다.  제10조 각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업단위명단을 각각 종합하여 제기한다.  제11조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명단공개 후 1개월 이내 해당지역 주요매체 및 기업정부당국사이트 또는 기타 대중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식을 취하여 기업관련 정보를 공포하여야 한다.  11.1 본 방법 제8조 제1관에 규정된 강제된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공포한 주요정보는 기업명칭, 법정대표, 기업소재지 주소, 배출오염물질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 총량, 기준초과 및 용량초과 상황을 포함한다.  11.2 본 방법 제8조 제2관에 규정된 강제된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공포한 주요 정보는 기업명칭, 법정대표, 기업소재지 주소, 주요에너지품종 및 소비량, 단위생산액 에너지소모, 단위제품 에너지소모, 단위생산 에너지소모 한도액 표준초과 상황을 포함한다.  11.3 본 방법 제8조 제3관에 규정된 강제된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공포한 주요 정보는 기업명칭, 법정대표, 기업소재지 주소, 사용하는 유독유해원재료의 명칭/수량/용도, 배출하는 유독유해물질의 명칭 및 농도와 수량, 위험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상황을 포함하며, 법에 의거 환경위험 예방조치 상황 등을 구체화한다.  11.4 본 방법 제8조 2관 이상 상황에 부합되는 기업은 상술한 요구를 참고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공포하여야 한다.  기업은 그 공포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12조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명단에 등재된 기업은 명단공개 후 2개월 내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본 방법 제8조 제3관에 규정된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2회 청정생산심사의 시간적 간격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자발적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강제성 청정생산심사의 절차를 참고하여 심사를 전개할 수 있다.  제14조 청정생산심사절차는 원칙상 심사준비, 예비심사, 심사, 방안의 모색과 선별, 방안의 확정, 방안의 실시, 지속청정생산 등을 포함한다.  제4장 청정생산심사의 조직과 관리  제15조 청정생산심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직∙전개함을 위주로 한다. 강제성 청정생삼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만약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단독으로 조직∙전개할 경우 본 방법 제16조 제2관 및 제3관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독립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외부전문가 초빙 또는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자문서비스기구에 위탁하여 협조를 받아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에 협조하여 청정생산심사업무를 조직∙전개하는 자문서비스기구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6.1 독립적 법인자격을 갖추고, 기업청정생산심사에 공평, 공정 및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질보증체계와 관리제도를 구비  16.2 청정생산심사 물질평형실험 및 에너지와 수(水)평형실험을 전개하는 기본적인 검사 분석기구, 설비 또는 수단 보유  16.3 관련업종의 생산공정 및 기술규정과 에너지절약, 절수, 오염방지관리요구를 갖춘 능숙한 기술자  16.4 청정생산심사방법에 정통하며 또한 청정생산심사 자문경험이 있는 기술자  제17조 본 방법 제8조 제1관과 제3관에 규정에 해당되어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명단공개일로부터 1일 이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정생산심사를 완성하고 또한 청정생산심사보고서를 해당지역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2관에 규정에 해당되어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명단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정생산심사를 완성하고 또한 청정생산심사보고서를 해당지역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은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과 기업이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진도에 따라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하도록 기업에 독촉하여야 한다.  제19조 유관부문 및 자문서비스기구는 청정생산심사를 실사하는 기업을 위하여 기술과 상업기밀을 지켜줘야 한다.  제20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 청정생산 전문가를 조직하거나 관련단위에 위탁하여야 하고, 이하의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효과에 대해 평가∙검수하여야 한다.  20.1 국가에서 심사한 규획 및 실행계획에서 명확히 강제성 청정생산심사 업무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기업  20.2 각 급 청정생산,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 등 재정자금을 신청한 기업  상술한 본 방법 제8조 제1관 및 제3관 규정과 연관되어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가∙검수업무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책임지고, 본 방법 제8조 제2관 규정과 연관되어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가∙검수업무는, 현급 이상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 책임진다.  제21조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평가의 중점사항은 기업청정생산심사과정의 진실성 및 청정생산심사보고서의 규범성 및 청정생산방안의 합리성과 유효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제22조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효과에 대한 검수는 이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2.1 기업이 청정생산방안을 실시∙완성 후, 오염물질 배출감소, 에너지자원 이용효율, 공정장비 조절 및 제품과 서비스 등 개선효과, 환경 및 경제효율 예상치 목표 도달여부  22.2 청정생산평가지표체계에 따라 기업청정생산수준에 대한 평정  제23조 본 방법 제20조 중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한 효과에 대한 평가∙검수의 경우, 소요비용은 평가∙검수를 조직한 부문이 지방정부에 예산편성을 신청한다. 평가∙검수업무를 담당하는 부문 또는 단위는 평가∙검수를 받은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제24조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실사하는 기업이 만약 평가∙검수가 필요한 경우, 강제성 청정생산심사의 관련조항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 청정생산심사평가∙검수의 결과는 낙후생산능력 범위를 확정하는 등 업무의 참고근거로 쓰인다.  제26조 현급 이상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은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과 매년 정기적으로 상1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과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에 관할지역 내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한 상황 및 평가∙검수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제27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환경보호부는 관련부문과 국가급 청정생산전문가센터를 건립하고, 업종청정생산 평가지표체계 및 중점업종 청정생산심사방침을 발포하고, 청정생산훈련을 조직∙전개하여,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하는데 정보와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각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은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과 현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청정생산훈련을 조직∙전개하고, 지방 청정생산전문가센터를 건립한다.  제5장 장려와 처벌  제28조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고, 또한 청정생산방안 실시 후 효과가 뚜렷한 기업에 대해 성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과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 그에 대해 표창하고, 해당지역 주요매체에 공포한다.  제29조 각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 및 기타유관부문은 국가중점투자계획과 지방투자계획을 제정∙실시 할 경우, 기업청정생산 실시방안 중의 에너지절약 이용효율 제고, 오염예방, 종합이용 등 청정생산항목에 열거된 중점영역으로 투자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30조 오염물질배출비용자금은 기업이 청정생산을 실시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오염물질배출비용 징수사용 관리조례>규정에 부합되는 청정생산항목에 대해, 각급 재정부문 및 환경보호부문은 오염물질배출비용 사용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준다.  제31조 기업이 청정생산심사와 훈련을 전개한 비용은 기업경영원가 또는 관련비용 계정과목에 계상함을 허락한다.  제32조 기업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기업내부 청정생산 표창장려제도를 마련할 수 있고, 청정생산심사업무 중 실적이 현저한 직원에 대해서는 장려한다.  제33조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본 방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제3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본 방법 제8조 및 제17조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심사 중 허위로 날조한 경우 또는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게 심사결과를 보고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기업이 위탁한 자문서비스기구가 규정내용 및 절차에 따라 청정생산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날조하며, 거짓된 심사보고서를 제공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종합협조부문과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 그것을 시정토록 명령하고, 또한 그 명단을 공포한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그에 따른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본 방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기업 또는 자문서비스기구는 성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과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 신용기록을 만들고, 전국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취합하여 기타유관부문 및 단위와 공동으로 징계를 한다.  제37조 유관부문의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기업기술과 상업기밀을 누설하여,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칙  제38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환경보호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9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은 본 방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0조 본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原)<청정생산심사 임시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환경보호총국령제1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清洁生产审核办法**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国家环境保护总局令第38号  为落实《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2012年），进一步规范清洁生产审核程序，更好地指导地方和企业开展清洁生产审核，我们对《清洁生产审核暂行办法》进行了修订。现将修订后的《清洁生产审核办法》予以发布，并于2016年7月1日起正式实施，2004年8月16日颁布的《清洁生产审核暂行办法》（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原国家环境保护总局第16号令）同时废止。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主任：徐绍史  环境保护部部长：陈吉宁  2016年5月16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促进清洁生产，规范清洁生产审核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清洁生产审核，是指按照一定程序，对生产和服务过程进行调查和诊断，找出能耗高、物耗高、污染重的原因，提出降低能耗、物耗、废物产生以及减少有毒有害物料的使用、产生和废弃物资源化利用的方案，进而选定并实施技术经济及环境可行的清洁生产方案的过程。  第三条 本办法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所有从事生产和服务活动的单位以及从事相关管理活动的部门。  第四条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会同环境保护部负责全国清洁生产审核的组织、协调、指导和监督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会同环境保护主管部门、管理节能工作的部门（以下简称“节能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根据本地区实际情况，组织开展清洁生产审核。  第五条 清洁生产审核应当以企业为主体，遵循企业自愿审核与国家强制审核相结合、企业自主审核与外部协助审核相结合的原则，因地制宜、有序开展、注重实效。  第二章 清洁生产审核范围  第六条 清洁生产审核分为自愿性审核和强制性审核。  第七条 国家鼓励企业自愿开展清洁生产审核。本办法第八条规定以外的企业，可以自愿组织实施清洁生产审核。  第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企业，应当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  （一）污染物排放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的排放标准，或者虽未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的排放标准，但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  （二）超过单位产品能源消耗限额标准构成高耗能的；  （三）使用有毒有害原料进行生产或者在生产中排放有毒有害物质的。  其中有毒有害原料或物质包括以下几类：  第一类，危险废物。包括列入《国家危险废物名录》的危险废物，以及根据国家规定的危险废物鉴别标准和鉴别方法认定的具有危险特性的废物。  第二类，剧毒化学品、列入《重点环境管理危险化学品目录》的化学品，以及含有上述化学品的物质。  第三类，含有铅、汞、镉、铬等重金属和类金属砷的物质。  第四类，《关于持久性有机污染物的斯德哥尔摩公约》附件所列物质。  第五类，其他具有毒性、可能污染环境的物质。  第三章 清洁生产审核的实施  第九条 本办法第八条第（一）款、第（三）款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名单，由所在地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按照管理权限提出，逐级报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核定后确定，根据属地原则书面通知企业，并抄送同级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和行业管理部门。  本办法第八条第（二）款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名单，由所在地县级以上节能主管部门按照管理权限提出，逐级报省级节能主管部门核定后确定，根据属地原则书面通知企业，并抄送同级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和行业管理部门。  第十条 各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节能主管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分别汇总提出应当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单位名单，由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会同环境保护主管部门或节能主管部门，在官方网站或采取其他便于公众知晓的方式分期分批发布。  第十一条 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应当在名单公布后一个月内，在当地主要媒体、企业官方网站或采取其他便于公众知晓的方式公布企业相关信息。  （一）本办法第八条第（一）款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公布的主要信息包括：企业名称、法人代表、企业所在地址、排放污染物名称、排放方式、排放浓度和总量、超标及超总量情况。  （二）本办法第八条第（二）款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公布的主要信息包括：企业名称、法人代表、企业所在地址、主要能源品种及消耗量、单位产值能耗、单位产品能耗、超过单位产品能耗限额标准情况。  （三）本办法第八条第（三）款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公布的主要信息包括：企业名称、法人代表、企业所在地址、使用有毒有害原料的名称、数量、用途，排放有毒有害物质的名称、浓度和数量，危险废物的产生和处置情况，依法落实环境风险防控措施情况等。  （四）符合本办法第八条两款以上情况的企业，应当参照上述要求同时公布相关信息。  企业应对其公布信息的真实性负责。  第十二条 列入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名单的企业应当在名单公布后两个月内开展清洁生产审核。  本办法第八条第（三）款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两次清洁生产审核的间隔时间不得超过五年。  第十三条 自愿实施清洁生产审核的企业可参照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程序开展审核。  第十四条 清洁生产审核程序原则上包括审核准备、预审核、审核、方案的产生和筛选、方案的确定、方案的实施、持续清洁生产等。  第四章 清洁生产审核的组织和管理  第十五条 清洁生产审核以企业自行组织开展为主。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如果自行独立组织开展清洁生产审核，应具备本办法第十六条第（二）款、第（三）款的条件。  不具备独立开展清洁生产审核能力的企业，可以聘请外部专家或委托具备相应能力的咨询服务机构协助开展清洁生产审核。  第十六条 协助企业组织开展清洁生产审核工作的咨询服务机构，应当具备下列条件：  （一）具有独立法人资格，具备为企业清洁生产审核提供公平、公正和高效率服务的质量保证体系和管理制度。  （二）具备开展清洁生产审核物料平衡测试、能量和水平衡测试的基本检测分析器具、设备或手段。  （三）拥有熟悉相关行业生产工艺、技术规程和节能、节水、污染防治管理要求的技术人员。  （四）拥有掌握清洁生产审核方法并具有清洁生产审核咨询经验的技术人员。  第十七条 列入本办法第八条第（一）款和第（三）款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应当在名单公布之日起一年内，完成本轮清洁生产审核并将清洁生产审核报告报当地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和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  列入第八条第（二）款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应当在名单公布之日起一年内，完成本轮清洁生产审核并将清洁生产审核报告报当地县级以上节能主管部门和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  第十八条 县级以上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应当会同环境保护主管部门、节能主管部门，对企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情况进行监督，督促企业按进度开展清洁生产审核。  第十九条 有关部门以及咨询服务机构应当为实施清洁生产审核的企业保守技术和商业秘密。  第二十条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或节能主管部门，应当在各自的职责范围内组织清洁生产专家或委托相关单位，对以下企业实施清洁生产审核的效果进行评估验收：  （一） 国家考核的规划、行动计划中明确指出需要开展强制性清洁生产审核工作的企业。  （二）申请各级清洁生产、节能减排等财政资金的企业。  上述涉及本办法第八条第（一）款、第（三）款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企业的评估验收工作由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牵头，涉及本办法第八条第（二）款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企业的评估验收工作由县级以上节能主管部门牵头。  第二十一条 对企业实施清洁生产审核评估的重点是对企业清洁生产审核过程的真实性、清洁生产审核报告的规范性、清洁生产方案的合理性和有效性进行评估。  第二十二条 对企业实施清洁生产审核的效果进行验收，应当包括以下主要内容：  （一）企业实施完成清洁生产方案后，污染减排、能源资源利用效率、工艺装备控制、产品和服务等改进效果，环境、经济效益是否达到预期目标。  （二）按照清洁生产评价指标体系，对企业清洁生产水平进行评定。  第二十三条 对本办法第二十条中企业实施清洁生产审核效果的评估验收，所需费用由组织评估验收的部门报请地方政府纳入预算。承担评估验收工作的部门或者单位不得向被评估验收企业收取费用。  第二十四条 自愿实施清洁生产审核的企业如需评估验收，可参照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相关条款执行。  第二十五条 清洁生产审核评估验收的结果可作为落后产能界定等工作的参考依据。  第二十六条 县级以上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会同环境保护主管部门、节能主管部门，应当每年定期向上一级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和环境保护主管部门、节能主管部门报送辖区内企业开展清洁生产审核情况、评估验收工作情况。  第二十七条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环境保护部会同相关部门建立国家级清洁生产专家库，发布行业清洁生产评价指标体系、重点行业清洁生产审核指南，组织开展清洁生产培训，为企业开展清洁生产审核提供信息和技术支持。  各级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会同环境保护主管部门、节能主管部门可以根据本地实际情况，组织开展清洁生产培训，建立地方清洁生产专家库。  第五章 奖励和处罚  第二十八条 对自愿实施清洁生产审核，以及清洁生产方案实施后成效显著的企业，由省级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和环境保护主管部门、节能主管部门对其进行表彰，并在当地主要媒体上公布。  第二十九条 各级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及其他有关部门在制定实施国家重点投资计划和地方投资计划时，应当将企业清洁生产实施方案中的提高能源资源利用效率、预防污染、综合利用等清洁生产项目列为重点领域，加大投资支持力度。  第三十条 排污费资金可以用于支持企业实施清洁生产。对符合《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规定的清洁生产项目，各级财政部门、环境保护部门在排污费使用上优先给予安排。  第三十一条 企业开展清洁生产审核和培训的费用，允许列入企业经营成本或者相关费用科目。  第三十二条 企业可以根据实际情况建立企业内部清洁生产表彰奖励制度，对清洁生产审核工作中成效显著的人员给予奖励。  第三十三条 对本办法第八条规定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违反本办法第十一条规定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第三十六条规定处罚。  第三十四条 违反本办法第八条、第十七条规定，不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或在审核中弄虚作假的，或者实施强制性清洁生产审核的企业不报告或者不如实报告审核结果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第三十九条规定处罚。  第三十五条 企业委托的咨询服务机构不按照规定内容、程序进行清洁生产审核，弄虚作假、提供虚假审核报告的，由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会同环境保护主管部门或节能主管部门责令其改正，并公布其名单。造成严重后果的，追究其法律责任。  第三十六条 对违反本办法相关规定受到处罚的企业或咨询服务机构，由省级清洁生产综合协调部门和环境保护主管部门、节能主管部门建立信用记录，归集至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会同其他有关部门和单位实行联合惩戒。  第三十七条 有关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泄露企业技术和商业秘密，造成企业经济损失的，按照国家相应法律法规予以处罚。  第六章 附 则  第三十八条 本办法由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和环境保护部负责解释。  第三十九条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可以依照本办法制定实施细则。  第四十条 本办法自2016年7月1日起施行。原《清洁生产审核暂行办法》（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国家环境保护总局令第16号）同时废止。 |